

한국가금학회 포상위원회 운영규정

2016년 11월 10일 개정
2019년 2월 22일 부분개정

제1조(조직) 본 학회는 정관 제4조, 제30조 2항에 따라 포상위원회를 두며, 위원들의 구성은 임원회의 임원으로 한다.

제2조(학회상의 종류와 수상요건) 학회상은 梧堂학술상, 공적상, 차세대 학술상, 공로패 그리고 감사패로 나누어 수여한다.

1. 梧堂학술상: 본 학회 정회원으로 당해연도 가금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서 최우수 논문을 선별하여 학술상을 수여한다. 수상대상자는 당해연도 가금학회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가금학 관련 논문게재 등 기타 학술적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어야 한다.
2. 공적상: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가금학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각 분야별 수상요건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연구분야 :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금학의 연구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가금학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한다.
 - ② 교육분야 :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금학 교육 및 후진양성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.
 - ③ 저술분야 : 가금학 발전을 위한 역작을 남긴 사람으로 한다. 공동저술인 경우는 공동수상으로 한다.
 - ④ 행정분야 : 가금학 및 가금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행정에 투신하여 가금(산업)진흥에 공이 지대한 사람으로 한다.
 - ⑤ 봉사분야 : 가금학 및 가금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보급, 산학협동, 학술진흥 및 학술육성 등에 공헌한 사람으로 한다.
3. 차세대 학술상 : 본 학회 정회원이나 준회원이어야 하며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, 박사 후 연수 과정 (Post-doc), 또는 젊은 과학자 (Young Scientist)로서 이들이 당해연도 가금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아직 미발표된 논문들 중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논문들 가운데서 최우수 논문을 선별하여 차세대 학술상을 수여한다.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4. 공로패 및 감사패 :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수여한다.

제3조(수상인원 및 상의 내용)

1. 梧堂학술상 : 매년 1명 이내로 한다.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.
2. 공적상 : 매년 약간 명으로 한다. 상패를 수여한다.
3. 차세대 학술상 : 매년 3명 이내로 한다.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.
4. 공로패 및 감사패 : 매년 약간 명으로 한다. 상패를 수여한다.

제4조(수상후보자 추천방법)

1.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제외한 모든 수상 후보자는 본 학회의 이사 1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 차세대 학술상 후보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.
2. 梧堂학술상 및 차세대 학술상을 위한 추천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추천사유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. 단 차세대 학술상은 아직 학회지에 발표되지 못하였지만 발표준비가 완료된 논문이면 수상후보 논문이 될 수 있다.
3. 공적상을 위한 추천자는 수상대상자의 성명, 연구논문 목록, 저서 목록 등 공적을 증명할만한 자료, 수상분야 및 추천사유(1,000자 이내)를 본 학회 사무실에 제출한다.
4. 공로패 및 감사패는 회장단 회의(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 및 각 분과위원장)의 추천 및 선정이 이루어진 사람이나 기관으로 한다.

제5조(포상자 및 추천 마감일 및 결정방법)

1. 포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수여일의 20일전까지 선정이 완료된다.
2. 포상위원회에서 선정된 포상 대상자는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보고한다.